

## 신 탁 계 약 서 전 후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(생 략)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· 2.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· 2.(현행과 같음) <u>3. 환매조건부 매수</u>
<b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 ①(생 략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 1. · 2.(생 략)	<b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 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법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1. · 2.(현행과 같음)
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 ①(생 략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  ③ · ④(생 략)	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 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(현행과 같음) 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 <u>④ · ⑤(호번변경)</u>
<u>&lt;신 설&gt;</u>	<b>부 칙</b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